

 신안산대학교	교원 국외출장에 관한 규정	규정 번호	2-3-15
		제정 일자	2001. 3. 1.
		개정 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전임교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10.6.,2019.11.14 개정>

제2조(구분) 교원의 국외출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국외출장: 국제학술대회의 발표 또는 학술교류 참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2. 공무국외출장: 대학의 학사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3. 기타국외출장: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국외출장 <2019.11.14.개정>

제3조(허가절차) 국외출장을 하고자하는 교원은 여행게시 10일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외출장허가신청서 [별지 제 1호]
2. 보강계획서(학기 중에 한함)
3. 초청장 또는 관련 증빙서류

제4조(출장기간) ① 학술국외출장은 여행의 목적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기당 통산 10일(토, 공휴일제외)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 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기간으로 한다.

③ 기타국외출장은 방학기간에만 실시 할 수 있으며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당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할 만 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허가의제안) 총장은 학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교원의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예외규정) 본 대학교의 교원연구년 및 연수규정과 국비지원에 의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5.20,2016.10.6.개정>

제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결 재	담 당	팀 장	처 장	총 장

성 명		학 과		직 위	
여 행 국			도 시 명		
여행기간	20 . . . () ~ 20 . . . () (일간)				
여행목적 (구체적으로)	학술발표(), 연구활동(), 초청방문(), 공무수행(), 관광(), 기타()				
여행기간중 연락처			경비부담	자비(), 교비지원(), 국비(), 기타 ()	
수업관련	휴·보강계획서제출 () 강의없음 () 기타 ()				
※첨부서류 1. 관련 증빙 서류(초청장, 일정표 등) 1부. (기타 국외여행 제외) 2. 휴·보강계획서 1부. (학기 중에 한함)					
위와 같이 국외여행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					학과장